

국제인권질서는 무너지는가:

“질서들의 세계”에서 본 인권질서의 회복력과 한반도의 과제’

2026년 07월 19일

김헌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과장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호주 그리피스대학교(Griffith University) 선임연구원과 부교수로 근무했다. 연구 분야는 인권과 이행기 정의이다.

이 글은 2026년 6월 29일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이 개최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국제질서의 전환기,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시 묻다: 안보, 인권, 인도주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토론문 및 당일 토론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1. 국제질서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오늘날 국제인권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전쟁과 강대국 경쟁이 격화되고 권위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안보와 국익을 앞세워 인권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언을 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하나의 고정된 제도나 완성된 구조로만 이해하면 현재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질서를 명사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국제법, 국제기구, 조약과 규칙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지속성에 주목한다. 반면 질서를 동사로 이해하면, 질서는 국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개인이 끊임없이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때로는 저항하고 수정하는 역동적 과정이 된다.

국제질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심적 체계이지만, 그렇다고 무질서한 공간은 아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규범과 제도를 유지하고, 경쟁하고, 변화시킨다. 국제인권질서 역시 한 번 만들어진 뒤 그대로 존속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상적인 심의와 판결, 감시와 기록, 피해자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질서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의 위기를 가볍게 보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인권질서가 어디에서 약화되고 있으며, 어떤 행위자와 제도가 이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다.

2. 하나의 국제질서가 아니라 '질서들의 세계'가 존재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보는 시각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 국제사회에는 안보, 통상, 환경, 인권, 인도주의, 개발 등 서로 다른 영역별 질서가 중첩되어 있다. 이들 질서는 동일한 속도로 발전하거나 후퇴하지 않는다.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충돌하고 경쟁한다.

안보질서가 강대국 경쟁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동안에도 국제통상이나 환경 분야의 일부 규칙은 유지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법원과 지역 인권기구, 시민사회가 인권규범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제조약이 공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자원과 정치적 지원이 사라지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인권질서 전체가 동시에 붕괴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어떤 제도가 약화되고 있는지, 어떤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새로운 행위자와 대응방식이 등장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국제인권질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면적 붕괴와 완전한 회복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다. 여러 질서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변화하는 '질서들의 세계'를 분석하는 시각이다.

3. 강대국과 스트롱맨은 국제인권질서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수정하려 한다

그럼에도 국제인권질서가 직면한 도전은 분명하고 심각하다. 가장 직접적인 도전은 강대국과 이른바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주권과 국가안보,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국제법과 인권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은 보편적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법 기관의 권위와 결정을 공격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 역시 우려스럽다. 국제기구의 판단이 자국의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원을 삭감하거나 탈퇴를 위협하고, 비정부기구와 개인의 국제기구 참여를 제한하면 제도는 공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점차 실질적 기능을 잃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후퇴가 국내정치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의 보편성보다 국가별 특수성과 상대주의를 강조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각국이 자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제적 심사와 책임을 거부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새롭게 권위주의화되는 국가들도 국제기구의 권고와 순위, 심사 절차를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규정하며 국내의 권력 집중을 정당화한다. 국내의 권위주의적 퇴행이 국제인권규범을 약화시키고, 약화된 국제규범이 다시 국내 권위주의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4. 기존의 위기에 새로운 인권 문제가 중첩되고 있다

전쟁과 대량학살, 난민과 강제이주와 같은 전통적인 인권·인도주의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디지털 감시, 온라인 플랫폼,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행정과 사법, 치안과 군사 영역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차별과 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디지털 플랫폼과 민간기업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선거와 정치참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국제인권제도는 국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초국가적 기업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기후변화 역시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 이주와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그러나 강대국 경쟁과 국가 중심의 이해관계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다자협력은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국제인권질서는 과거의 미해결 문제와 새로운 기술·환경적 도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문제의 수와 복잡성은 증가하지만 국제기구의 재정, 정치적 권위와 협력 기반은 약화되는 불균형이 현재 위기의 핵심이다.

5. 단기적으로 인권질서는 후퇴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제인권질서가 후퇴할 가능성은 높다. 인권 옹호 활동의 공간은 축소되고, 주권과 안보, 국익이 인권보다 우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다.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인권질서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지역, 국제 차원에 이미 형성된 여러 제도와 행위자는 축적된 규범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국내 법원은 국제인권규범을 판결에 인용하고, 시민사회는 피해를 기록하며,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는 제한된 여건에서도 심의와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국제인권질서의 회복력은 하나의 중심국가나 국제기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가, 국제기구, 지역기구, 국내 법원,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피해자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제도가 약화되더라도 전체 질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행위자가 기존 제도의 관성과 축적된 규범을 활용해 새로운 대응방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원상회복은 아니더라도 후퇴한 질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재건할 수 있다. 인권은 앞으로도 국제정치의 중요한 질서로 살아남을 것이다. 다만 그 생존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려는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실천에 달려 있다.

6. 인권의 역사는 진보와 역행이 반복된 과정이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전망의 첫 번째 근거는 국제인권질서의 발전 과정 자체에 있다. 오늘날의 인권규범은 어느 한 국가나 문명이 일방적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경험을 가진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의 기여가 축적된 산물이다.

인권의 발전은 한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중요한 진보 뒤에는 거의 언제나 심각한 역행이 뒤따랐다. 냉전과 독재, 전쟁과 집단학살은 국제인권규범이 형성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역행이 이전 세대가 이룬 성과를 모두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고문 금지, 인종차별 철폐, 여성과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국제형사책임과 같은 원칙은 반복적인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사회적 인식 속에 축적되어 왔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성취를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반인권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규범의 내용을 다시 확장했다.

오늘날의 도전 역시 특정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국제인권질서는 처음부터 논쟁적이었고, 국가주권과 보편성, 정치와 법, 서구 중심성과 지역적 다양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발전했다. 바로 그 긴장과 논쟁을 거치며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인권질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회복력의 근거가 된다.

7. 이행기정의는 피해자와 기록이 질서를 다시 움직이는 방식을 보여준다

두 번째 근거는 이행기정의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과정은 국가와 국제사회가 사건을 잊으려 해도 피해자의 고통과 책임규명 요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인권침해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이 규명되지 않으면 피해와 침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부정과 왜곡은 새로운 형태의 2 차 가해가 된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한다. 이러한 끈질긴 요구는 이행기정의가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발전도 피해자의 요구가 제도적 언어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과거에는 정치적 변화가 없으면 책임규명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국제재판소와 국내 법원, 진실위원회, 보편관할권과 다양한 조사기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기술 발전도 책임규명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인공위성 사진, 디지털 포렌식, 지리정보시스템, 휴대전화 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쟁과 대규모 인권침해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를 비롯한 분쟁 현장에서 축적되는 디지털 자료는 즉각적인 책임규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미래의 수사와 재판, 역사적 기록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진실위원회와 조사기법이 여러 국가로 전파되고, 피해자 단체와 전문가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습효과도 발생한다. 한 국가의 피해자들이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가능한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공소시효나 증거보존, 배상과 기억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행기정의는 권력을 가진 국가가 침묵한다고 해서 인권질서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기억, 국제법의 축적, 기술과 초국적 연대가 결합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책임규명의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다.

8. 결론: 인권질서는 자동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국제인권질서는 현재 분명한 후퇴를 겪고 있다. 강대국과 스트롱맨 지도자들은 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국제기구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전쟁과 인도주의 위기는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도전까지 등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권과 안보, 국익이 인권보다 앞서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인권질서를 하나의 중심과 제도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습도 보인다. 국내 법원과 지역기구,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피해자와 연구자들은 이미 형성된 규범과 제도를 활용해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의 역사는 진보와 역행의 반복이었으며,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제법, 기술과 초국적 학습은 새로운 책임규명의 가능성을 만들어 왔다.

국제인권질서는 저절로 살아남지 않는다. 법과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규범을 적용하는 사람, 피해를 기록하는 시민사회,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원과 국제기구, 그리고 이를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후퇴를 인권질서의 종말로 선언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나 과거의 제도화만 믿고 회복을 낙관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앞으로의 국제인권질서는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이 후퇴에 대응하고, 새로운 문제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정치와 법의 중심에 놓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다.